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사업 참여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,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(현행)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
 (개정)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2호)

○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
○ 사업 참여자의 자격조건 완화(안 제4조)

- (현행) 포항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- (개정)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
○ 사업장 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정기검사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로 개정(안 제14조)

다. 관련법령

❍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 및 제46조(고용 촉진),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❍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, 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’ 고용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, 위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종합검토 결과

- 2025년 2월 기준,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’은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며, 종사자 20명과 근로장애인 63명, 훈련장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’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제46조,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‘장애인 근로사업장’으로 설치 근거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,

- 또한,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근거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‘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’이란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을 현행 ‘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’에서 ‘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’로 변경하였으며,

-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‘장애인 근로사업장’의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음. 다만 안 제2조의2 제2항 제2호 ‘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’에 따라 향후 물품 생산과 판매 시에 장애인들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안 제4조 근로장애인의 대상을 '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'으로 개정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됨.

- 아울러, 안 제5조에 근거하여 작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만큼 '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'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들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